

1. 개정이유

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, 액비의 이용처 확대 등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, 타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가 고품질 부숙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정비함(안 제3조)
- 나.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,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의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(안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”을 “정화처리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등록”을 “허가를 받거나 등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12조제6항”을 “법 제12조의2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”을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인증기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축산업”을 “축산업 허가증 또는”으로 하고 “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6호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3.3.23>

환경친화축산농장 [] 지정신청서 [] 지정사항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(신고인)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※ 농장지정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지정신청서 : 50일 변경신고서 : 10일
신청인 (신고인)	농장명(성명)	전화번호	
	농장 소재지	농장지정번호(변경신고 시)	
신 청 현 황	가축종류 한우 [], 젖소 [], 돼지 [], 닭 [], 기타 []	사육두수 (두, 수)	
	축사 및 부지 면적 축사 : m ² , 부지 : m ²		
	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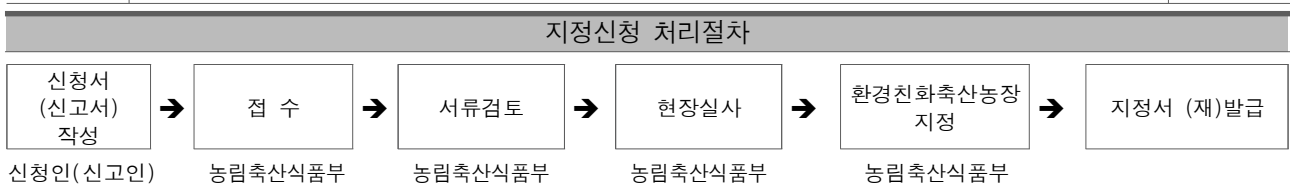
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변 경 사 항	대표자 성명		
	농장 소재지		
	농 장 명		
	가축사육 마리수	(두, 수)	(두, 수)
	축 사 면 적	m ²	m ²
	가축분뇨처리시설		
	악취저감 시설·장비	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1항·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(지정사항 변경)을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(지정 신청 시) 1.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2. 가축의 종류, 가축사육두수, 축사 및 부지 면적, 농장관리계획, 농장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3.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,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, 퇴비·액비화 물량, 농경지의 확보 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.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각 1부 (변경 신고 시) 1.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액비) 법 제2조제6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”이란 「비료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(액)의 공정규격을 말한다. 다만,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.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	제3조(액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 삭제></u>
제4조(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(養分)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략) 3. 퇴비·액비 등으로의 자원화, <u>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</u>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. ~ 7. (생략)	제4조(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정화처리</u> ----- ----- 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기준)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	제7조(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기준) -----

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(이하 “지정기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<u>등록</u>을 한 농장일 것 2. <u>법 제12조제6항</u>에 따른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. 「<u>축산물위생관리법</u>」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<u>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</u> 적용 농장일 것 4. (생략) 제8조(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·관리 등)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(지정사항 변경신고서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<u>축산업 등록증 사본</u> 및 <u>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</u>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2. ~ 4.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허가를 받거나 등록</u>----- ----- 2. <u>법 제12조의2</u>----- ----- ----- 3. 「<u>축산물 위생관리법</u>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<u>안전관리인증기준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제8조(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·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축산업 허가증 또는</u> -- <u>안전관리인증기준</u>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	---

② ~ ⑥ (생 략) 제9조(퇴비·액비의 이용촉진 등)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 ·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6. <u>해양에 배출하는 가축분뇨의</u> <u>감축 방안</u>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9조(퇴비·액비의 이용촉진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	---